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4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NGO센터 운영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NGO센터 사용 단체의 편의를 위해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NGO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NGO센터 운영위원의 수(안 제7조제2항)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이용료(제8조제2항)
  - 그 밖의 시설 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개소한 NGO센터의 운영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NGO센터

사용단체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NGO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